

## 전임교원 책임시수 및 강의료 지급 규정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예원예술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전임교원의 책임시수 및 강의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1조의2(적용범위)** ① 이 규정은 본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에 적용한다.

② 전임교원을 제외한 기타교원 및 시간강사는 별도의 규정 및 계약에 따르되,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.<조신설 2015.1.13>

**제2조(강의의 구분과 정의)** ① 본교의 강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
1. 특수강의 : 실험, 실습, 실험 실습, 실기 등의 지도와 시범을 위한 수업
2. 보통강의 : 전호 이외의 평상수업
3. 특별강의 : 국내외의 저명인사 및 명예교수가 담당하는 수업
4. 초과강의 : 책임시간을 초과하는 수업
5. 시간강의 : 전임교원 이외의 교원이 시간제로 담당하는 수업
6. 인터넷강의 : 인터넷으로만 수업을 진행하는 강의

② 시수라 함은 이 규정 제5조에 따라 산정된 시간 수를 말한다.

③ 책임시수라 함은 전임교원이 의무적으로 담당해야 하는 주당 강의 시간수를 말한다.<조개정 2015.1.13>

**제2조의2(강의료의 구분과 정의)** 본교의 강의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<조신설 2015.1.13>

1. 초과강의료 : 전임교원 및 기타교원의 초과강의에 대한 강의료
2. 특별강의료 : 제3조제3호에 따라 지급하는 강의료
3. 시간강의료 : 제3조제5호에 따라 지급하는 강의료

**제3조(시수계산)** 시수는 해당 교과목에 부여된 학점과 동일하게 산정하되, 다음의 각호는 예외로 한다.

1. 학점과 주당 강의시간 수가 서로 상이한 보통강의의 경우에는 그 교과목의 주당 강의 시간 수를 시수로 인정할 수 있다.
2. 실기 기타 특정 기능에 대해 실기를 지도하는 특수강의의 경우에는 실제 강의시간을 시수로 인정할 수 있다.
3. 외부에 위탁하여 실습하는 현장실습 등의 특수강의는 2학점을 1시수로 인정한다.

**제4조(책임시수)** ① 전임교원의 강의시간 배정은 주당 4일 이상에 걸쳐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책임시간 수는 주당 12시간으로 한다.<개정 2019.1.23.>

② 책임시수는 대학(학부) 및 대학원의 담당 강의시수를 통산하되 계절학기 및 계약학과의 담당 강의시수는 산입하지 아니한다.

**제4조의2(책임시간미달 및 보충)** ① 특별한 사유로 책임시간에 미달될 때에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책임시간 미달이 발생한 교원은 사유서 및 [별지 제1호 서식] 연간강의계획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당해학기 책임시간 미달시간은 다음 학기에 보충하여야 한다. 다만, 미달시간을 보충하기 위한 초과강의 시간에 대한 강의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

③ 당해학기 미달시간을 다음 학기까지 보충하지 못한 경우 이 사항을 교원 인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.<조신설 2015.1.13>

**제5조(책임시수의 감면)** ① 보직교원의 책임시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보직을 겸한 경우에는 책임시수가 적은 한 쪽을 인정할 수 있다.

1. 처장 : 3시간<개정 2019.1.23.>
2. 단장, 원장, 부처장, 관장 : 6시간<개정 2019.1.23.>

3. 센터장 : 9시간<신설 2019.1.23.>

4. 학부(과)장 : 12시간<신설 2019.1.23.>

② 전임총장(퇴임 후 1년간에 한함) 및 정년퇴직 2학기 이내의 전임교원은 책임시수를 6시간으로 한다.

③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책임시수를 감면할 수 있다.

④ 총장이 임명한 산학협력단 산하 사업기구 책임자의 책임시수는 총장의 승인을 얻은 후 감면할 수 있다.

**제6조(강의료의 지급과 계산)** 강의료는 다음의 각 호에 의하여 각각 강사료를 지급한다.

1. 특수강의는 2시간을 1시간으로 하여 강의료를 지급한다. 다만,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보통강의시간과 동일하게 계산할 수 있다.

2. 초과강의는 초과 강의한 교원에게 주 단위로 계산하여 실제 초과한 시간수(감면된 시수가 아닌 제4조의 책임시수를 기준으로 한다)에 대하여 초과강의료를 지급한다. 단, 협동(업적)강좌, 비 학점 교육은 예외로 한다.<개정 2019.1.23.>

3. 특별강의 및 시간강의는 총장의 위촉에 따라 강의를 담당하는 자에게 실제로 강의한 시간 수에 의하여 강사료를 지급한다.

4. 2명 이상이 담당하는 교과목을 팀티칭교과목이라 하며, 시간 수 계산은 담당교원, 강사의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한다.<신설 2015.1.13>

5. 각종 강의료의 계산은 매학기 강의 시작일로부터 종강일까지 한다.

**제7조(강의료 지급 기준)** ① 시간당 강의료의 지급 기준 금액은 매년도의 예산범위 안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지급 기준 금액을 증액할 수 있다.

1. 특별강의의 시간당 강의료는 기준 금액의 5배 이내로 하되, 명예교수는 2배 이내로 한다.

2. 강의를 위하여 숙박을 요하는 경우의 시간당 강의료는 기준 금액의 3배 이내로 한다.

② 전항의 “시간당”이라 함은 이 규정 제5조에 의해 환산된 시수를 말한다.

**제8조(강사료의 지급의 특례)** ① 다음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강의를 담당하지 아니한 교원(시간강사 포함)에게도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.

1. 시험기간

2. 교내 또는 국가적 행사로 인하여 휴강할 때

3. 정규 강의 시간이외에 총장의 위촉에 의하여 다수의 학생 또는 학생단체를 지도할 때

4.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으로 학교가 임시휴업을 하였을 때

② 전항 제1호의 경우에는 실제 시험시간표에 의해 근무한 교원(시간강사 포함)에 한한다.<개정 2015.1.13>

**제9조(강의료 지급기일)** ① 각종 강의료는 매학기 15주를 4주씩 나누어 계산하며, 강의료 지급은 당월 분을 익월 5일 이내에 지급하고 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에 지급한다.

② 계절수업 강의료는 종강 후 10일 이내에 지급한다.<개정 2015.1.13>

③ 전항에도 불구하고 기타 규정, 고용계약서 등에서 지급기일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<개정 2015.1.13>

부 칙(2009. 2. 1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2. (폐지)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예원예술대학교 강사료 지급 규정은 폐지한다.

부 칙(2012. 12. 21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5. 1. 13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9. 1. 23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